

# 인삼 약초 유통지원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이 영 중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 1. 인삼관련 법규

- 농림부 인삼산업법 : 인삼의 원료수준에서의 관리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 인삼을 이용한 일반가공식품 관리
- 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법 :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인삼가공품 관리
- 보건복지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 한약 규격품으로서의 인삼유통관리

## 2. 인삼의 이용 형태

### 가. 일반식품으로서의 인삼제품

- 식품공전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근거
  - 인삼제품류 :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속하지 않는 일반가공식품 (인삼 음료, 인삼과자, 인삼껍, 당침인삼 등)
- ※ 인삼이 주원료가 아니더라도 일반가공식품에 인삼을 소량 첨가하여 인삼성분만 확인 된다면 인삼제품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인삼도안 등 인삼의 특성을 표시할 수 있음.
- 기능성 표시 불가

- 자가품질검사 :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 검사를 월1회 이상 실시 (식품위생법 제19조)

### 나.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인삼제품

- 건강기능식품공전 :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 및 제19조 근거
  - 인삼/홍삼제품 : 인삼/홍삼농축액, 인삼/홍삼농축액분말, 인삼/홍삼분말, 인삼/홍삼성분함유제품(10% 이상)
  - 기능성 표시내용 : 원기회복, 면역력증진, 자양강장에 도움  
(이외의 기능성표시는 현재로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과학적 자료제출에 의한 개별심사평가 후 표시범위 확대 가능)
- 자가품질검사 :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 검사를 월1회 이상 실시 (건강기능식품법 제25조)

### 다. 한약재로서의 인삼

- 대한약전에 인삼과 미삼이 수재되어 있음.
-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한의원과 약국 등에서 의약품으로 제조됨.

### 3. 한약재로서의 인삼

#### 가. 한약재 관련 용어

구분	재배 및 채취단계 (의약품의 원료)	제조(가공) 및 유통 단계 (의약품)	조제 및 투약 단계 (침약, 탕약, 환약 등)
용어	한약재	한약규격품	한약

#### 나.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한약재 품목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2005년 3월 9일 입법예고

- 필수수치(법제)품목 - 18개품목

건강(건강초탄, 건강포), 녹각교, 대황(주대황, 초대황, 대황초탄), 두충(염두충, 강두충, 두충초탄), 반하(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보골지(염초보골지), 부자(염부자, 제부자, 포부자), 숙지황, 신곡, 오수유(제오수유, 염오수유), 우담남성, 원지(제원지, 밀원지), 주사(주사분), 지유(지유초탄), 토사자(염초토사자, 주초토사자), 파극천(염파극, 주파극, 제파극), 형개(형개초탄), 희침(주중희침)

- 위·변조 우려품목 - 24개품목

갈근, 감국, 계지, 계피, 광곽향, 녹용(녹용중품 포함), 녹각, 도인, 마황, 반하, 백두구, 복령, 사삼, 소엽, 오가피, 용안육, 우황, 저령, 전충, 진피, 차전자, 토사자, 행인, 홍화

- 중독우려품목 - 7개품목

감수, 부자, 주사, 천남성, 천오, 초오, 파두

- 기원 및 형태 문제품목 - 2개품목

육계, 후박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 - 18개품목

감초, 건강,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백작약, 산수유, 산약, 산조인, 시호, 천궁, 택사, 향부자, 황금, 황기, 황련, 황백

□ 이상 69개 품목에 수입인삼의 위조와 변조를 예방하고 의약품용 인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인삼을 추가하여 70개 품목으로 함.

□ 한약재로서의 인삼은 규격품으로서 유통되어야 함.

□ 한약재로서의 인삼은 이산화황, 중금속, 잔류농약으로부터 안전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2005년 8월 1일)

-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 총 206종 한약재의 검사기준을 정하였는데, 인삼은 30ppm 이하로 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2005년 10월 24일)

- 기존 총 중금속 함량 기준으로 30mg/kg이하 이던 식물성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납 5mg/kg, 비소 3mg/kg, 수은 0.2 mg/kg, 카드뮴 0.3 mg/kg 이하로 개정 고시함.

#### 다. 한약규격품의 수급 및 유통관리체계 개선

○ 한약규격품의 제조업소 제조의무화 추진

- 한약규격품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므로, 의약품 용도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안전성과유효성)를 위하여 반드시 제조업소에서만 제조되어야 함

- 국산한약재 생산농민과 한약 도매업소 등에서는 제조에 따른 원가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

○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4. 인삼 연구기관의 역할 증대 필요.

○ 인삼의 재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국가 연구기관의 역할이 필요함.